



제339회 임시회

2015.04.22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## 전문위원 검토보고

2.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 종 욱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15년 04월 13일

○ 회부일자: 2015년 04월 14일

3. 제안이유

제증명 수수료를 무료화 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제명 「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  
를 「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」로 변경함

나. 배정수수료, 제증명 수수료 삭제(안 제2조)

다. 수수료 징수방법 변경(안 제4조제1항)

라. 수수료 면제사유 중 “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” 및 “민원인이  
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” 등을 감면사유에서 삭제  
(안 제5조제1항1호,2호 및 제2항)

마. 제증명 수수료 및 고등학교 전학·편입학 배정 수수료 무료화  
(안 별표 1)

바. 정보공개 수수료 변경(안 별표 2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개정안은 각종 제증명 수수료와 고등학교 배정 수수료 등을 무료화 하여,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제명을 「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」로 변경한 것은, 안 제2조에서 “제증명 수수료”가 삭제됨에 따라, 제명에서 “제증명 등”을 삭제한 것이며,
-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로 최근 3년 간 도내 각급 기관(학교)의 수수료 징수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, 민원인의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300원(영문발급 600원)을 징수하기 위한 행정적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인 바,
- 동 조례 개정안은 제증명 수수료의 무료화를 통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편의성을 높여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,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**제137조(수수료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**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3.21.>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4.1.>